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488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1. 25.
판 결 선 고	2017. 2.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6.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5,344,650원의 부과처분 중 30,308,87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9. 4.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0,994,260원의 부과처분 중 26,077,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 1. 16.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고 C에 대하여 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30,046,580원 중 24,674,4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원고 B에 대한 처분일자 '2017. 1. 16.'는 '2015. 9.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17필지 면적 합계 25,840㎡(이후 [redacted]시 D 잡종지 25,850.6㎡로 합병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5. 8. 17.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로 취득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3. 29.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13. 8.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5. 6. 18. 이 사건 운전학원 신축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5. 7.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 A은 2015. 9. 17. [redacted]지방경찰청에 종전 '고양시 덕양구 E'에서 운영하던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는, 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건축허가 기준 504.2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7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3,529.54㎡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②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호에 따라 지목이 도로인 별지1 목록 순번 14, 16 기재 각 토지 면적 합계 72㎡는 비과세대상으로, ③ 나머지 면적 합계 22,238.41㎡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15. 9. 4. 원고 A에게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5,332,010원을, 원고 B에게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9,296,580원을, 원고 C에게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1,824,76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2016. 6.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당초 처분에 '2015. 1. 13.자 건축변경허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이 514.56㎡로 변경된 것을 간과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을 일부 잘못 산정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자, 2017. 1. 16. 위 변경된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3,602.13㎡(종합합산과세대상은 22,165.82㎡)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지분을 정정하여, 원고 A에게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계 35,344,65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 B에게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계 30,994,260원으로 감액하며, 원고 C에게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계 30,046,580원으로 증액하는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7. 1. 16. 원고 A, C에 대하여 한 각 증액경정처분과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5. 9. 4.자 원고 B에 대한 2015년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0,994,1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운전학원은 2014. 10.경 이미 그 건축물 및 부속시설이 완공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다만 피고가 건축물 사용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부당하게 이 사건 토지의 합병을 요구하고 당초 인가조건인 [redacted]시 소유의 진입도로 2필지의 매각을 지연시켜 그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인 점, 또한 원고 A은 이미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사업자로서 피고의 사용승인 지연으로 인해 그 등록이전이 늦어지게 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부과기준일(2015. 6. 1.) 당시를 기준으로 전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위와 같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시설 및 지상정착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뿐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의 필요시설인 기능실습장과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514.59㎡)과 위 각 시설의 수평투영면적(12,133.03㎡ + 1,002.90㎡)을 합한 면적 13,650.5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7배를 곱하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운전학원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1 목록 순번 제11 내지 17 기재 각 토지는 모두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된 도로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8조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주차장 부지 1,002.90㎡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의 1)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를 들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99조,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 · 기능교육장 ·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원의 위치'는 위 등록 및 변경등록사항에 해당하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라 함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 등록 내지 변경등록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등록 예정인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나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이 이전할 예정인 토지'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2015. 6. 1.) 이후인 2015. 6. 18.에야 이 사건 운전학원 신축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원고 A이 종전 '고양시 덕양구 E'에서 운영하던 'F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을 마친 시점(2015. 9. 17.)도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인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준공검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변경등록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이후로 늦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 외의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건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에 의해 재산세에서의 건축물에는 포함되는 시설, 즉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의 수평투영면적까지 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들고 있는 기능실습장과 주차장 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의 3)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그러나 갑 제13,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별지1 목록 순번 11 내지 13, 15, 17 기재 각 토지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거나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갑 제13, 15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각 토지에 조성된 진입로의 양 옆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인접한 농경지와는 상당한 고도차가 존재하는바, 위 각 토지는 당초의 조성목적대로 이 사건 운전학원의 진출입로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 연구 ·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시설물의 부설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차장으로 활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운전학원 신축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2015. 6.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2015. 7. 6.) 및 이 사건 운전학원을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는 변경등록을 마친 시점(2015. 9. 17.)은 모두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인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운전학원 내에 설치하였다는 부설주차장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운전학원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김영석

판사 김선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별지1

목 록

1. [redacted]시 G 전 456㎡
2. [redacted]시 H 전 908㎡
3. [redacted]시 I 임야 8,769㎡
4. [redacted]시 J 임야 9,729㎡
5. [redacted]시 K 임야 1,887㎡
6. [redacted]시 L 임야 1,878㎡
7. [redacted]시 M 임야 49㎡
8. [redacted]시 N 임야 874㎡
9. [redacted]시 O 임야 253㎡
10. [redacted]시 P 임야 265㎡
11. [redacted]시 Q 답 148㎡
12. [redacted]시 R 답 182㎡
13. [redacted]시 S 전 91㎡
14. [redacted]시 T 도로 20㎡
15. [redacted]시 U 전 42㎡
16. [redacted]시 V 도로 52㎡
17. [redacted]시 W 전 237㎡.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별지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 도로교통법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법 제99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적은 서류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며,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설립·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시설 및 설비
3. 강사의 명단·정원 및 배치 현황
4. 교육과정
5. 개원 예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명칭 및 위치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1조(변경등록)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17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